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및 국가비용 자원 근거 신설〉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3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및 국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5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 및 국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안 제14조 단서 삭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설>	⑪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¹⁾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현황(25.7.)]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	가구수
합계	20개		9,859
인천광역시	옹진군		19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9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98
충청북도	옥천군		59
충청남도	보령시	1	1,005
충청남도	서산시		173
충청남도	서천군		4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	1,03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99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55
전라남도	여수시		1,078
전라남도	구례군		52
전라남도	고흥군		61
전라남도	해남군		193
전라남도	진도군		187
전라남도	신안군		2,620
경상북도	울릉군		101
경상남도	통영시		1,540
경상남도	거제시		3
경상남도	남해군		67

※ 읍·면·동 수는 해당 읍·면·동의 전체 면적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일 경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 읍·면·동 수로 산입하고 일부 면적일 경우에는 읍·면·동 수에 산입하지 않음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외지역이 환경 관리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20년 감사원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중 250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2개(40.8%) 지역에서 폐기물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경부에 해당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생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리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특히 도서·산간 등 소규모 지자체는 행정 역량과 전문 처리인력이 부족하여 수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어려워 혼선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 지정 폐지시,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수성과 인구 감소로 인한 수거·운반 차량 증차, 인력 증원, 선박·시설 확충 등 막대한 예산과

2) 감사원(2020.3.)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등 처리방안 미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불가피하게 폐지할 경우에는 조직 개편과 시설 설치에 대한 충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6